

#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내규

제정 2022. 12. 1.  
개정 2024. 5. 28.  
개정 2024. 12. 11.  
개정 2025. 1. 6.  
개정 2025. 9. 12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자양체육관 등 광진구로부터 수탁·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체육시설”이란 광진구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딸린 설비·비품 등을 말한다.  
➔ 1. “체육시설”이란 광진구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딸린 설비·비품 등을 말한다. <개정 2025.9.12.> 사유: 문화예술회관 적용 조례 반영
2. “회원”이란 체육시설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3. “관리자”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관리·안내·운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.
4. “사용료”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으로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통칭한다.

## 제2장 체육시설 운영

**제3조(운영계획 수립 및 분석)** 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상·하반기 운영분석을 실시하고,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운영시간)**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1. 평 일 06:00~22:00
2. 토, 일요일 09:00~18:00

**제5조(휴관)**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1.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자양체육관 : 둘째, 넷째 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
  2. 중곡문화체육센터 : 첫째, 셋째 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
- ②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, 시설의 정비 및 보수 또는 기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 그 사유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, 임시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기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6조(이용약관 등)** ① 체육시설 이용자는 「별표 제1호」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- ② 1항의 이용수칙 이외에 시설의 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이용수칙을 게시할 수 있다.

**제7조(수강신청)** ① 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체육시설이 정한 「별지 제1호 서식」의 수강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➔ ① 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체육시설이 정한 「별지 제1호 서식」의 수강신청서와 「별지 제10호 서식」의 문화시설 이용수칙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 <개정 2025.9.12.> 사유: 면책동의서 신규 시행

- ② 수강신청은 체육시설 홈페이지 또는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며, 대리신청은 신청인의 신분증(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을 지참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강좌의 변경 및 연기)** <삭제 2024.12.11.>

**제9조(사용료)** ① 사용료는 수강료(강습 및 연습), 이용료(일일입장), 사물함 보증금 및 사용료, 대관료, 주차요금으로 구분한다.

-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하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2주전부터 게시판에 게시하고,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변경된 사용료를 적용한다.
- ③ 회원은 사용료를 현금, 신용·직불카드 등의 결제를 통해 납부하되, 신용카드 수수료는 체육시설의 부담으로 한다.
- ④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른다.

**제10조(사용료의 감면)** 사용료의 감면은 사물함 보증금 및 사용료를 제외한 수강료, 이용료, 대관료에 적용한다. 단, 주차요금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

**제11조(사용료의 환불)** ① 환불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「별지 제4호 서식」의 환불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며, 대리 신청시 대리인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(대리인 및 회원 신분증, 기발급된 회원증)를 제시하여야 한다.

- ② 사용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다.

**제12조(수입금의 관리)** ①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관련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징수하고 매월 발생한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단이나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매월 말일까지 예치된 수입금은 익월 20일까지 광진구 세외수입일반계좌에 입금하고 매월말이 기준으로 세입현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 (단, 이자수익금은 매연도 말 합산하여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.)

**제13조(사물함)** ① 사물함 신청 및 환불은 회원이 직접 「별지 제5호 서식」의 사물함신청서 또는 「별지 제6호 서식」의 사물함환불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, 대리 신청시 대리인은 증빙자료(대리인 및 회원 신분증, 기발급된 회원증)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사물함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.

1.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취소 시에는 보증금 전액반환 및 사용일수 공제 후 반환

2.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취소 시에는 보증금에서 사용료를 공제 후 반환

③ 사물함 이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 종료 처리 및 사물함 내의 물품은 별도 보관하며, 보관물품 수거 후 3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할 수 있다.

➔ ③ 사물함 이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 종료 처리 및 사물함 내의 물품은 별도 보관하며, 보관물품 수거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(유실물법 등)에 따라 임의 처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9.12.>

④ 사물함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 이용약관 기준에 따른다.

**제14조(대관)** ① 체육시설 대관 신청인(이하 “신청인” 라 한다)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(사업장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, 보험가입증서)를 제출·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대관 승인은 관리자가 사용허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·검토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서와 함께 허가한다.

③ 대관 사용료는 대관 사용 허가일 이전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,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

④ 체육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**제15조(셔틀버스 이용)** ① 셔틀버스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, 노선은 각 사업장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
② 셔틀버스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·하차하여야 하고, 셔틀버스 운영시간 내 도로사정, 차량정체 등에 따라 도착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.

**제16조(부설주차장)** ① 체육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 질서 및 순환을 위해 유료화 운영하며, 운영시간은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.

② 주차요금은 강좌이용 회원의 경우 1강좌당 3시간 무료이며, 비회원의 경우 10분당 500원을 부과한다. 단, 자유수영 및 자유헬스의 경우 3,000원(3시간 초과시 10분당 500원)을 부과한다.

**제17조(손해배상)** ① 「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한다. 다만,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
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체육시설 이용약관, 안전수칙 위반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
**제18조(분실물)** ① 분실물 접수는 내용물을 확인하여 「별지 제7호 서식」의 분실물관리대장에 관리 번호와 관계사항을 등재한다.

② 분실물 보관은 관리자가 접수한 분실물에 「별지 제8호 서식」 분실물표를 부착하여 귀중품은 금고에 보관하고, 일반 물품은 보관함에 안전하게 보관한다.

③ 분실물 게시는 관리자가 체육시설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「별지 제9호 서식」의 분실물 공고 양식에 분실물의 습득일시, 습득장소, 품명, 수량,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하여 습득일로부터 14일간 게시한다. 단, 분실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나 그 속에 있는 명함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분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분실자에게 그 분실물을 찾아가도록 통지한다.

④ 분실물 처리는 관리자는 게시기간이 지나도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분실물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귀중품의 경우 관할 경찰서 (지구대, 파출소, 출장소 포함)에 인계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이를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한다.

⑤ 분실물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정확히 확인하여 분실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영수 날인 후 반환한다. 단, 3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은 물품은 폐기처리 한다.

## 제3장 보칙

**제19조(내규의 준용)** ①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 제 규정 및 광진구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,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상위 법령을 준용한다.

②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부칙

<개정 2022. 12. 1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내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내규는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칙

<개정 2024. 5. 28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내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내규는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칙

<개정 2024. 12. 11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내규는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 **부칙**

<개정 2025. 1. 6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내규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내규는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 **부칙**

<개정 2025. 9. 12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내규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내규는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 체육시설 이용약관

- 1차 개정 : 2020. 7.
- 2차 개정 : 2024. 3.
- 3차 개정 : 2024. 5. 28.
- 4차 개정 : 2024. 12. 11.
- 5차 개정 : 2025. 1. 6.
- 6차 개정 : 2025. 9. 12.

**제1조(목적)** 이 약관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(이하 ‘회원’ 이라 한다)와 체육시설 간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삭제)

### 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‘회원’ 이라 함은 체육시설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- ② ‘시설’ 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/문화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및 그에 따른 음향, 조명, 체육기자재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.
- ③ ‘서비스’ 라 함은 회원의 이용상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- ④ ‘등록일’ 이라 함은 체육시설과 회원이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리를 말한다.
- ⑤ ‘개시일’ 이라 함은 체육시설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.
- ⑥ ‘이용일’ 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등록기간 또는 사용허가취소(환불)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.

### 제4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-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에 게시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.
- ② 체육시설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### 제5조(체육시설의 게시 및 설명의무)

- ① 체육시설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 내 게시판 등에 다음사

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
1.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
2. 수강료
3. 약관내용
4. 소지품 보관시 유의사항 등
5. 회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

② 체육시설은 회원이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.

### 제6조(회원의 종류)

① 일반회원 : 일반회원이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체육시설 홈페이지에 가입한자를 말한다.

② 일일회원 : 일일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에서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자유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.

### 제7조(회원의 의무)

① 회원은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 이용수칙을 지켜야 하며, 안전요원 또는 지도강사의 지도/감독에 따라야 한다.

② 회원의 부주의나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현물 내지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회원은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체육시설 내의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된다.

### 제8조(회원의 자격)

회원의 자격은 체육시설의 약관에 동의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### 제9조(회원의 자격제한)

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은 회원자격을 심의하여 1차 3개월, 2차 6개월, 3차 영구적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① 정신질환 등 심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경우

② 전염성 질병이 걸린 경우

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

④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

⑤ 강습질서문란, 배타적 회원화합, 다른 회원들로부터 금전 및 금품 각출행위로 인하여 이용회원 간 또는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

⑥ 강사 또는 직원 등 센터 관계자에게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

⑦ 회원 간 또는 강사에게 폭언,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
⑧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

⑨ 이용자가 일일입장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강습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

- ⑩ 회원 간 자리선점 및 자리 다툼의 원인행위를 한 회원
- ⑪ 체육시설 내 이용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직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

**제10조(회원증 제시)**

- ① 회원증은 체육시설 내 시설 이용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, 직원이나 지도강사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.
- ②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체육시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, 재발급시에는 체육시설에서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(1,000원)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증은 양도/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, 양도/양수한 회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회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
**제11조(회원모집)**

체육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.

- 1. 기존회원 : 전월 15일 ~ 전월 21일(21시)
- 2. 신규회원 : 전월 22일 ~ 말일(선착순 마감)
  - 가. 광진구민(우선) : 전월 22일~24일
  - 나. 타 구민 포함 : 전월 25일~말일
  - ※광진구민 :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

- ②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중곡센터에서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.

➔ ②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9.12.> 사유: 오타 수정

- 1. 광진구민 신규등록 첫 날(매월 22일)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: 평일 운영일로 연기
- 2. 타 구민 포함 신규등록 첫 날(매월 25일)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: 온라인 접수만 진행
- 3. 그 외 명절 포함 공휴일 등의 문제로 등록 기간이 매우 부족하거나, 기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접수 기간 임시 변경 운영
- ③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에서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- ④ 1인 1강좌 제한: 수영강좌에 한하여 1인 1강좌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
  - 1. 수영강좌는 수영장 내 정규강좌를 의미하며, 일일입장(자유수영)은 제외한다.
  - 2. 수영강좌와 타 강좌의 복수 등록은 해당하지 않는다.

**제12조(회원가입 신청)**

- ① 체육시설의 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서

를 기재하여 제출하고,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.

➔ ① 체육시설의 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「별지 제1호 서식」의 수강신청서와 「별지 제10호 서식」의 문화체육시설 이용수칙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. <개정 2025.9.12.> 사유: 면책동의서 신규 시행

② 신청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신청시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,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체육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(반변경) <삭제 2024.12.11.>

### 제14조(수강료의 연기 및 환불)

① <삭제 2024.12.11.>

② <삭제 2024.12.11.>

③ <삭제 2024.12.11.>

④ <삭제 2024.12.11.>

⑤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개시일 이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환불신청일까지의 강습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총 수강료의 10% 금액을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한다.

1. 개시일 이전 : 「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

2. 개시일 이후 : 총 수강료 - (총 수강료 ×  $\frac{\text{이미 이용한 횟수}}{\text{계약상 이용 횟수}}$ ) - 위약금(총 수강료10%)

⑥ <삭제 2024.12.11.>

### 제15조(사물함 보증금 및 사용료)

① 체육시설 이용 회원에 한하여 사물함 사용이 가능하며 보증금 및 사용료는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다

1. 사물함 보증금 : 10,000원

2. 사물함 월사용료

- 월사용료 : 소형사물함 3,000원 / 대형사물함 4,000원 / 골프사물함 5,000원

② 사물함키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, 키분실요금 10,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

### 제15조의1(수강료)

1. 수강료는 서울특별시광진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2. 수강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(당해 체육시설)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.

## 제16조(손해배상)

- ①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(물)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체육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.
- ②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- ➔ ① 체육시설의 결함, 안전관리 미비 등 시설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회원의 신체상,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배상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다.
  - ② 사고로 발생한 회원의 신체상, 재산상 피해에 대해 시설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, 회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 시 또는 회원이 사고 방지가 가능했던 경우, 체육시설 측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.
  - ③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9.12.>

## 제17조(소지품의 보관)

- ① 회원은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체육시설은 회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시설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
- ③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체육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- ④ 회원은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,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,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,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  - ➔ ④ 상법 제153조에 따라 회원은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,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,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,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 <개정 2025.9.00.>
  - ~~⑤ 기타 회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. <삭제 2025.9.12.> 사유: ④와 내용 중복~~

## 제18조(삭제)

## 제19조(시설운영 및 휴관)

-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:00부터 폐장은 22:00을 원칙으로 하되, 체육시설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

1.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자양체육관 : 둘째, 넷째 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
  2. 중곡문화체육센터 : 첫째, 셋째 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
- ③ 체육시설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,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,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,보수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- ④ 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체육시설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.
- ⑤ 시설 운영 및 휴관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20조(기타)

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육시설관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.

➡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육시설과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. <개정 2025.9.12.> 사유: 오타 수정

**부칙**(2012.11.16.)

### 제1조(시행일)

본 약관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
**부칙**(2020.07.01.)

### 제1조(시행일)

본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
**부칙**(2024.03.28.)

### 제1조(시행일)

본 약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
**부칙**(2024.05.28.)

### 제1조(시행일)

본 약관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
**부칙**(2024.12.11.)

### 제1조(시행일)

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
**부칙**(2025. 1. 6.)

**제1조(시행일)**

본 약관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
**부칙**(2025. 9. 12.)

**제1조(시행일)**

본 약관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
# 수 강 신 청 서(안)

접수자	
-----	--

성 명	생년월일	연 락 처	주 소	
강 좌 명		수 강 료	할인 후 결제 금액	
할인 항목 (증빙자료 제출 필수)	50%	30%	20%	5%
	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(광진구민)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유공자 (배우자 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초생활수급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병역명문가	<input type="checkbox"/> 만 65세 이상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원봉사 활동자 (광진구청장 발급 자원봉사자증 소지자)	<input type="checkbox"/> 친환경 마일리지 가입자(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 증명)

### 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]

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.

<p><b>1. 수집 항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름,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), 주소, 건강정보</li> <li>서비스 이용 정보, 결제 정보(카드사/계좌 정보 등)</li> </ul> <p><b>2. 수집·이용 목적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원 식별 및 관리</li> <li>프로그램 예약 및 이용 안내</li> <li>서비스 관련 고지 및 민원 처리</li> </ul>	<p><b>3. 보유·이용 기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원 탈퇴 시 또는 수집 목적 달성 시까지</li> <li>단,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음</li> </ul> <p><b>4. 동의 거부 권리 및 안내</b></p> <p>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원가입 및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p>
---	--

- 위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-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

20\_\_년 \_\_월 \_\_일

신청인: (서명)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(시 설 명) 귀하

[ 회 원 서 약 서 ]

상기 본인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시설 및 기자재를 훼손하지 않으며,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 변상하겠습니다.
2. 공단의 규정을 지키고 회원증 양도·대여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3.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,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·분실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.
4. 강좌 수강에 지장이 있는 질병 또는 전염병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[ 환 불 규 정 ]

1. 모든 회원은 시설 이용 시 회원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 (회원카드 최초 발급 1회 무료, 분실 시 재발급 비용 1,000원)
2. 공단의 귀책 사유 및 인원 미달로 폐강 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3.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등에 의거,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.

- 개강일 이전: 「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
- 개강일 이후: 환불 신청일까지의 강습일수 금액과 총수강료의 10%를 공제한 후 환불

예시) 개시일 이후 : 총 수강료 - (총 수강료 ×  $\frac{\text{이미 이용한 횟수}}{\text{계약상 이용 횟수}}$ ) - 위약금(총 수강료10%)

4. 환불 신청은 온라인/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, 환불금은 약 2주 이내에 작성하신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.
5. 인원 미달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[ 회 원 건 강 문 진 표 ]

	뇌졸중 (중풍)	심장병 (심근경색/협심증)	고혈압	당뇨병	이상지질혈증	폐결핵	기 타
진 단							
약물치료							

1. 위 사항 외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여부 (  있음  없음 ) [병명: \_\_\_\_\_ ]
2. 최근 6개월 이내 수술 또는 입원 병력 여부 (  있음  없음 ) [병명: \_\_\_\_\_ ]
3. 현재 건강상 특이 사항 (  있음  없음 ) [병명: \_\_\_\_\_ ]

※ 강좌 등록 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(만65세 이상) 회원의 경우 개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를 등록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



## 환 불 신 청 서(안)

※ 굵은 칸만 작성

접수자	
-----	--

성 명	생년월일	연 락 처		
<b>강 좌 명</b>				
환불계좌 정보	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	관계
환불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강사 불만 (사유: )		<input type="checkbox"/> 강습 프로그램 불만 (사유: )	
	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 불만 (사유: )	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원 서비스 미흡 (사유: )	
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 사정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)	

수강기간	결제방법	수강횟수	이용횟수( ) / 총 수업횟수( )	
환불금액	결제 수강료	이용료	위약금	환불금액

**[ 환불 규정 ]**

1. 공단의 귀책 사유 및 인원 미달로 폐강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2.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등에 의거,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.
  - 개강일 이전: 「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
  - 개강일 이후: 환불 신청일까지의 강습일수 금액과 총수강료의 10%를 공제한 후 환불

예시) 개시일 이후 : 총 수강료 - (총 수강료 ×  $\frac{\text{이미 이용한 횟수}}{\text{계약상 이용 횟수}}$ ) - 위약금(총 수강료10%)
3. 환불 신청은 방문·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  - 방문 신청: 회원 본인이 방문하여 「환불신청서」 작성 후 접수처에 제출 (대리 신청 시 회원증, 신청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지참)
  - 온라인 신청: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→ 수강내역 → 내 수강내역(재등록, 환불) → 강좌명 클릭 → 하단의 환불신청 → 환불요청정보 및 취소 사유 작성

**상기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.**

20\_\_년 \_\_월 \_\_일

신청인: (서명)

**광진구시설관리공단 (시 설 명) 귀하**

## 사 물 함 신 청 서(안)

※ 굵은 칸만 작성

접수자	
-----	--

성 명	생년월일	연 락 처
수강 강좌명	사물함 위치	사물함 크기
	<input type="checkbox"/> 내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외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소형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형

보 증 금	사 용 료	사물함 번호
10,000원 (현금)	<input type="checkbox"/> 소형 3,000원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형 5,000원	

### [ 사물함 사용 및 환불 규정 ]

1. 사물함 사용료는 선납입니다.
2. 사물함 보증금 10,000원은 현금으로 지불하여야합니다.
3. 사물함은 강좌 수강 회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배정하며, 월단위로 접수합니다.
4. 임대기간 종료(또는 강좌의 종료/환불) 후 보증금 10,000원을 환불해드립니다.
5. 사물함 중도 환불 신청 시 사용일수 (일일금액 소형 100원, 대형 167원)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합니다.
6. 사물함 환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 중으로 처리되고, 연체일수에 대해 사용료가 부과되며, 보증금은 부과된 사용료를 공제한 차액이 지급되오니 임대기간 종료 후 꼭 연장 또는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임대기간 종료 후 연체 60일이 경과되면 보증금 10,000원은 소멸됩니다.
7. 환불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, 환불금은 약 2주 이내에 작성하신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.  
 • 방문 신청: 회원 본인이 방문하여 「사물함 환불신청서」 작성 후 접수처에 제출  
 (대리 신청 시 회원증, 신청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지참)
8. 사물함 이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경과하여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 종료 처리 및 사물함 내의 물품은 별도 보관합니다. 별도 보관한 물품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반환 요청하지 않은 경우, 공단은 사전 안내 후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.
9. 사물함 내의 보관물의 도난, 분실,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, 습기있는 물품의 보관으로 인해 악취 또는 곰팡이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개인사물함 장기연체로 임의처분 된 보관물품을  
 규정에 따라 복지기관 기증 또는 폐기 처분합니다.    신청인: \_\_\_\_\_ (서명)

동의함    동의안함

본인은 개인사물함을 사용함에 있어 상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\_\_년 \_\_월 \_\_일

신청인: \_\_\_\_\_ (서명)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(시 설 명) 귀하

## 사 물 함 환 불 신 청 서(안)

※ 굵은 칸만 작성

접수자	
-----	--

성 명	생년월일	연 락 처	
사물함 위치	사물함 크기	사물함 번호	
<input type="checkbox"/> 내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외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소형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형		
환불계좌 정보	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
			관계

사용기간		이용일수	(    ) 일 / 30일
환불금액	보증금	사용료	최초 결제 수단

### [ 사물함 사용 및 환불 규정 ]

1. 사물함 사용료는 선납입니다.
2. 사물함 보증금 10,000원은 현금으로 지불하여야합니다.
3. 사물함은 강좌 수강 회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배정하며, 월단위로 접수합니다.
4. 임대기간 종료(또는 강좌의 종료/환불) 후 보증금 10,000원을 환불해드립니다.
5. 사물함 중도 환불 신청 시 사용일수 (일일금액 소형 100원, 대형 167원)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합니다.
6. 사물함 환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 증으로 처리되고, 연체일수에 대해 사용료가 부과되며, 보증금은 부과된 사용료를 공제한 차액이 지급되오니 임대기간 종료 후 꼭 연장 또는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임대기간 종료 후 연체 60일이 경과되면 보증금 10,000원은 소멸됩니다.
7. 환불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, 환불금은 약 2주 이내에 작성하신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.  
 • 방문 신청: 회원 본인이 방문하여 「사물함 환불신청서」 작성 후 접수처에 제출  
 (대리 신청 시 회원증, 신청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지참)
8. 사물함 이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경과하여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 종료 처리 및 사물함 내의 물품은 별도 보관합니다. 별도 보관한 물품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반환 요청하지 않은 경우, 공단은 사전 안내 후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.
9. 사물함 내의 보관물의 도난, 분실,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, 습기있는 물품의 보관으로 인해 악취 또는 곰팡이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상기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.

20\_\_년 \_\_월 \_\_일

신청인: \_\_\_\_\_ (서명)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(시 설 명) 귀하



## 분 실 물 관 리 대 장

1. 관리번호	
2. 습득일시	
3. 습득장소	
4. 품 명	
5. 물품내역	
6. 수 량	
7. 습 득 자	
8. 인 수 자	
9. 비 고	



[별지 제1호]

## 광진구시설관리공단 (시설명) 이용수칙 확인 및 동의서

### ■ (시설명) 이용안내

1. 이용자는 (시설명) 이용 시 종목·강좌별 특성, 신체활동 접촉, 운동기구(채, 공 등), 기후(비, 눈, 기온 변화) 등에 따라 신체적 상해나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외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.
2. 이용자는 이러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며,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.
3. 본 시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점검, 위험 표지 설치, 안전관리 등을 성실히 수행합니다.
4. 본 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는 본 면책 동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5.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.

### ■ 이용수칙

1. 이용자는 「광진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 내규」 및 본 시설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2. 이용자는 감염병이 있거나 음주한 상태에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3. 이용자는 개인의 질병, 부상 이력, 현재 컨디션 등 운동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강사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.
4. 시설 안에 취사도구 등 화기류 반입은 금지하며, 시설 내 취식행위, 음주 및 흡연을 금합니다.
5. 음식물(음료 포함)은 시설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.  
(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, 3회 이상 반복 시 「체육시설 이용약관」에 따라 회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
### ■ 안전사고 면책동의 사항

1.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,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상, 물적 피해, 인명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·형사상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.
2. 단, 시설의 결함, 안전관리 미비 등 시설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본 면책 동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3. 시설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, 이용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 시 또는 이용자가 사고 방지가 가능했던 경우, 시설 측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본 동의서를 충분히 읽고 전부 이해 하였으며,  
시설관리 담당자의 안내를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.

※ 밑줄 친 부분을 자필로 기재

20\_\_년 \_\_월 \_\_일 신청인: (인)

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

주) 파란색 표시부분은 각 사업장에 맞게 수정 후 고객에게 배포